

- 2021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- 모집공고 안내

-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고의 융합기술전문 연구기관입니다.
- 「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」 사업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기술기반 대학생 스타트업 육성사업으로, 미래 성장동력인 대학(원)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보유자원 및 서울대학교 창업 인프라 활용, 대학생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
- 도내 대학 기술창업 허브, 도내 대학(원)생 창업 저변 확대

□ 모집기간 : 2021년 3월 15일(월) ~ 4월 9일(금) 17:00 까지

□ 지원규모 : 25팀(신규 20팀, 후속지원 5팀)

○ 신규지원(20팀)

- 경기도 소재 대학(원)생* 또는 경기도 거주** 대학(원)생으로서,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***

* 대학(원)생 : 재학생 · 휴학생으로서, 대학(원)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

** 경기도 거주 :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상 경기도 거주자

*** 초기창업자 :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

○ 후속지원(5팀)*

- 전년도 사업 수혜자 가운데 추가지원을 원하는 자(최대 3년 사업 참여 가능)

* 후속지원 자격조건

- 전년도 사업 참여팀 중 대표자 및 아이템이 동일해야 함(단순 기업명 변경 및 법인전환 인정)
 - 전년도 사업수혜자는 후속지원으로만 신청가능하며, 전년도 사업 포함 최대 3년 참여 가능
-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대학(원)을 졸업한 경우, 졸업자 신분으로 지원 가능
- 동일한 대표 · 아이템이라도 중간에 사업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 신규 참여자로 간주

□ 모집분야

-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 : 지능형 헬스케어, 미래형 도시설계, 차세대 교통시스템
- 기타 기술기반 창업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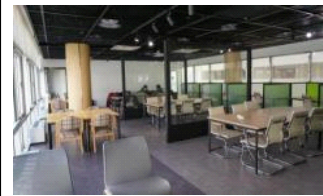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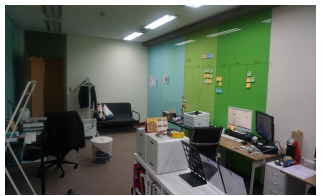
* 제외업종

- 음식업, 사치향락업종, 주점업, 금융업, 사행성 불건전 게임개발 및 공급업, 컨설팅업 등

□ 지원기간 : 선정일로부터 ~ 2021년 12월

□ 주요 지원내용

1. 인프라 지원 (자금 및 공간)

사업화 지원금	· 최대 50,000천원 ~ 최소 10,000천원 - 중간평가를 통한 3단계 차등지원 *부가세(10%) 자부담 - 연구개발비, 지식재산권 출원/등록비, 홍보 마케팅비, 창업활동비 등
창업공간	· 공동창업공간(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) - 사업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동 창업 공간(사업자등록 가능) · 개별사무공간(4개실) - 사업 참여 스타트업 개별 사무실 무료 입주 지원 ·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(시제품 개발 지원)    공동창업공간(2층) 개별사무공간(13층)

2. 융합기술 창업지도

창업지도교수 및 맞춤형 코칭	· 융기원 연구진, 서울대 교수진 등 전문가 멘토 Pool 운영 · 팀별 책임지도제 창업지도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코칭, 2Track 운영
--------------------	--

3.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

기본·실무 창업교육	· (융합기술 창업특강) 기술창업 성공사례 및 기업가정신 교육 · (창업실무 세미나) 선배 스타트업 초청 홈커밍데이, 모의 투자유치 IR피칭데이
특화 액셀러레이팅 및 네트워킹	· (지식재산 전문교육) H/W, S/W 창업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· (스타트업 밋업) 도내 성공 스타트업 투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· (데모데이) 우수 스타트업 IR 피칭 및 시제품 전시회

□ 신청기간 : 2021년 3월 15일(월) ~ 4월 9일(금) 17:00 까지

□ 신청방법

○ 온라인 접수

- 용기원 홈페이지(aict.snu.ac.kr) 또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(www.gsp.or.kr)
- 온라인 신청 시 소정 양식의 제출서류* 및 증빙서류** 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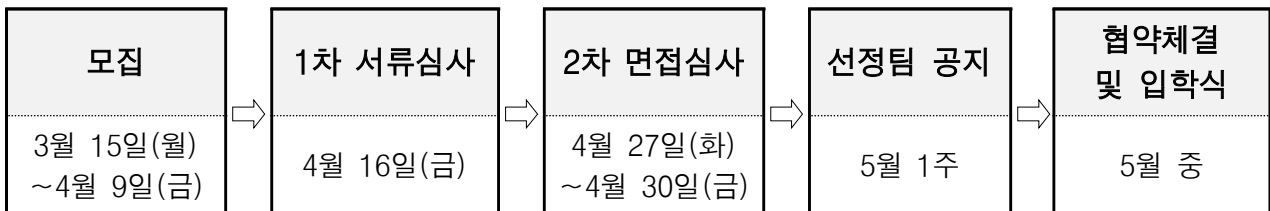
*** 제출서류**

- ① 「지원신청서」 [제1호 서식]
- ② 「세부 사업계획서」 [제2호 서식]
- ③ 「창업자 서약서」 [제3호 서식]
- ④ 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」 [제4호 서식]

**** 증빙서류**

- ① 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 등 대학원(생)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
- ② 주민등록등본/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(경기도 거주자에 한함)
※ 등(초)본 발급 신청 시 '**신청내용 - 모두 미포함**' 으로 발급
- ③ 사업자등록증(초기 창업기업에 한함)
- ④ 가점 부여사항에 대한 확인증(제1호 서식-가점 부여사항 참조)

□ 추진일정(안) *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

□ 자격제한
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- 경기도 및 타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에 선정된 자(기업). 단, 기존 수행사업 협약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

※ 창업사업화 지원사업

-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(중기부 공고)」 제2조 마목 24호에 따른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, 재료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홍보물 제작, 마케팅,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를 의미하며, 현물 및 현금 모두를 포함 (다만, 각 창업지원 사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본 용어의 구체적 의미·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)

-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,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
-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자 또는 기업

□ 유의사항

- 사업 선정팀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함
-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
- 사업에 선정된 초기창업자 가운데 사업자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닐 경우, 중간 평가 전 사업자 주소지를 경기도로 변경해야함
- 사업장은 사업종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해야함
-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, 신청서 허위 기재, 타 사업의 지원금 수령 및 중복참여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,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※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기업은 경기도 모든 사업에 무기한 참여 불가

□ 문의처 :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

- 전화/이메일 : 031-888-9060, 9058 / startups_aict@naver.com